

3. 土地超過利得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財政經濟院 公告 第1997-12號 1997. 2. 14

주 요 골 자

- 가.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판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판정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수도권 이외에 소재한 공장의 공장증설여유면적이 기준면적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되도록 함.
- 나. 임야의 개간에 의해 조성한 농지 또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준보전임야에 대하여는 재촌자경과 영림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, 토지의 수용·해외이주·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촌자경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판정의 예외를 인정함.
- 다. 체육시설업용 토지중 정구장 및 대중골프장용 토지등에 대한 수입금액적용비율과 광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판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유휴토지판정에 대한 법간 협평을 도모함.

개 정 취 지

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개정(대통령령 제15,194호, 1996. 12. 31)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